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매년 정기회 기간중 5일이내로 실시하되" 를 "매년 정기회의 기간중 10일 이내로 실시하되" 로 한다.

제5조 제1항 4호를 다음과같이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충청북도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6.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중 충청북도가 4분의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충청북도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6조 제1항을 다음과같이 한다

①감사또는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법 제36조 제3항에 규정된 국가위임사무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9조 제1항중 "관계인의 출석·증언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로 하고 제3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 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⑤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표1의 선서서와 같이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내지 제17조를 각각 제13조 내지 제20조로 하고 제10조 내지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국가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 등)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행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2조내지제11조 및 제12조내지제20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법 제36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 또는 의회가 감사를 실시한 지방의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대리출석, 답변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전까지 의회 의장이나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1 의회에서의 증인 선서서를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가.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설명문안)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서

선 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증 인 : (인)